

# 심사보고서

## 【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684
----------	-----

2022. 3. 22.  
자치행정위원회

### 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김현택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# 가. 제안이유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른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노인체육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 (안 제2조)
- 노인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 마련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 및 제9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-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9일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의2 (노인체육의 진흥)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안 제9조에 시장은 노인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체육동호회 조직 활성화 지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.

금번 조례 개정에 따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체력증진, 건전한 체육활동을 보장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, 노인체육에 대한 우리 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생략

#### 5. 토론요지

○ 없음

#### 6. 심사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

#### 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**붙임 :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**